가족관	계등록	루창설	신고서
(너	위	01)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								' '	-			
① 가족관 계등록 창설자	본인 성명		한글	(성)	/ (명)	본				성 별	1	남 [2]여
			한자	(성)	/ (명)	(한자)				민등록번호 생 연 월 일		_
	등록기준지								E	0 6 6 6		
	주	소										
		부(父)	성명	(성)	/ (円)	등록	기 준	지				
	부					주민등	등록반	호			_	
	모	모(母)	성명	(3)		등록	기 준	지				
				(성)		주민등	등록반	호			-	
②신분이	네 관형	한 사항						,				
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				년	월	일	법	원명				
④기타사항												
⑤ 신고인		성 명		⑩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-								
		자 격	11년	트인	2배우	자 3	직계	혈족	4	기타(자격 :)
		주 소						전	화		이메일	
⑥제출인]	성 명				주	민등	루번	호		_	

작 성 방 법

- ※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①란: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와 함께 가족 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: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②란:이 신고서에서 정한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별지로 첨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서(신분표)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- ④란: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(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).
- 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